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순서

1. 연도별 상담현황 -----	2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 94.5%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5.2% -----	3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 전체 가해자의 94%가 남성, 이중 성인은 80% -----	3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 본인이 직접상담 58.3%, 대리인 상담 40.6% -----	4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 모든 연령에서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많고 강간 피해가 뒤이어 --	5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 성인 가해자가 전체의 83.1% -----	6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7.1% -----	7
8. 상담원 지원내용 -----	8
9. 직장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상담 세부통계 -----	9
9-1. 상사에 의한 피해가 50.1% 동료, 고용주가 뒤이어 -----	9
9-2.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성희롱 -----	10
10. 강간피해 상담 세부통계 -----	11
10-1. 피해자의 96.1%는 여성, 성인 피해가 61.5% 차지 -----	11
10-2. 가해자 성별은 94.6%가 남성, 가해자의 80.5%가 성인 -----	11
10-3. 본인이 직접상담 53.2%, 대리인 상담 44.9% -----	12
10-4. 강간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13
: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7.3% 유아-청소년의 경우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가 많아 -----	13
10-5. 상담 전 조치 및 대응 -----	14
10-6. 상담원 지원내용 -----	14
10-7. 강간죄 '최협의설'에 근거한 성인강간피해 분석 -----	15
10-8. 피해자들의 강간 경험과 강간죄 최협의 판단기준의 괴리 -----	16

한국성폭력상담소 2017년 상담통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17년까지 27년 동안 총 81,866회의 상담을 해왔다. 2017년 전체상담은 2,118회 (1,414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955회(1,260건)으로 전체상담건수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89.1%이다.

1. 연도별 상담현황

<표1. 연도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도	상담회수	상담건수(A)	성폭력상담건수(B)	성폭력상담비율(B/A)
1991.92	2,834	2,028	1,349	66.5
1993	1,765	1,182	841	71.1
1994	2,553	1,723	1,356	78.7
1995	2,050	1,238	1,021	82.5
1996	3,459	2,138	1,779	83.2
1997	3,424	2,295	1,647	71.8
1998	4,285	2,948	2,085	70.7
1999	5,397	3,692	2,564	69.4
2000	4,164	2,873	2,309	80.4
2001	4,995	3,593	2,869	79.8
2002	4,877	3,533	2,961	83.8
2003	4,871	3,135	2,839	90.6
2004	3,870	2,505	2,362	94.3
2005	3,979	2,348	2,151	91.6
2006	4,246	2,468	2,317	93.8
2007	3,330	2,101	1,948	92.7
2008	2,237	1,548	1,430	92.4
2009	2,305	1,481	1,338	90.3
2010	2,227	1,474	1,312	89.0
2011	1,764	1,238	1,151	92.9
2012	2,390	1,437	1,321	91.9
2013	2,253	1,531	1,418	92.6
2014	2,185	1,602	1,450	90.5
2015	2,064	1,422	1,308	91.9
2016	2,224	1,501	1,353	90.1
2017	2,118	1,414	1,260	89.1
총	81,866	54,448	45,739	84.8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 94.5%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5.2%

<표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상담 전체건수 1,260건 중 1,191건(94.5%)이 여성피해자로 나타났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준다. 전체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인여성 피해자로, 총 915건(72.6%)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 피해도 평균 5% 선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올해도 5.2%를 차지하고 있다.

<표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성별 \ 연령대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916 (72.7)	141 (11.2)	75 (5.9)	36 (2.9)	23 (1.8)	1,191 (94.5)
남	46 (3.7)	5 (0.4)	8 (0.6)	5 (0.4)	2 (0.2)	66 (5.2)
미상	2 (0.2)	0 (0.0)	0 (0.0)	0 (0.0)	1 (0.1)	3 (0.2)
총계	964 (76.5)	146 (11.6)	83 (6.6)	41 (3.3)	26 (2.1)	1,260 (100.0)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 전체 가해자의 94%가 남성, 이중 성인은 80%

<표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상담 건수 1,260건 중 성인남성 가해자가 1,008건(8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 가해자 성별 중 남성이 전체 1,260건 중 1,185건(94%)을 차지하였다.

<표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대성별 \ 연 령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33 (2.6)	4 (0.3)	1 (0.1)	3 (0.2)	5 (0.4)	46 (3.7)
남	1,008 (80.0)	95 (7.5)	16 (1.3)	2 (0.2)	64 (5.1)	1,185 (94.0)
미상	6 (0.5)	0 (0.0)	0 (0.0)	0 (0.0)	23 (1.8)	29 (2.3)
총계	1,047 (83.1)	99 (7.9)	17 (1.3)	5 (0.4)	92 (7.3)	1,260 (100.0)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 본인이 직접상담 58.3%, 대리인 상담 40.6%

<표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734건으로 전체의 58.3%를 차지했다. 대리인이 상담을 한 건수는 전체의 40.6%를 차지하였다. 대리인 상담에서는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이웃친구와 직장이 뒤를 이었다.

대리인 상담에서 데이트 상대가 상담하는 경우는 2011년, 2012년 전체 대리인 상담 건수 중 7%대에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에는 10%대로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9.7%로 다소 낮아졌다.

<표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단위: 건(%)

전체상담 건수	본인	대리인 512 (40.6)									본인/ 대리인 (함께 상담)	미상
		가족 친인척	데이트 상대	이웃 친구	직장	학교 학원	사회 복지 기관	기관 단체	변호사	기타		
1,260 (100.0)	734 (58.3)	255 (20.2)	50 (4.0)	72 (5.7)	53 (4.2)	31 (2.5)	14 (1.1)	22 (1.7)	1 (0.1)	14 (1.1)	13 (1.0)	1 (0.1)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 모든 연령에서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많고 강간 피해가 뒤이어

<표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모든 연령별로 강제추행의 피해가 500건(39.7%)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및 강간미수(347건, 27.5%)가 뒤이어 전년도와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피해 유형 가운데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이용촬영, 스토킹의 상담 비율은 제작년, 작년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표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피해유형		피 해 자 연 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및 강간 미수	특수강간	6 (0.5)	3 (0.2)	0 (0.0)	0 (0.0)	0 (0.0)	9 (0.7)	347 (27.5)
	강간 (유사강간포함)	125 (9.9)	47 (3.7)	17 (1.3)	12 (1.0)	4 (0.2)	205 (16.3)	
	준강간	91 (7.2)	12 (1.0)	0 (0.0)	0 (0.0)	0 (0.0)	103 (8.2)	
	강간미수	24 (1.9)	2 (0.2)	2 (0.2)	0 (0.0)	2 (0.2)	30 (2.4)	
강제 추행	강제추행	341 (27.1)	46 (3.7)	49 (3.9)	24 (1.9)	6 (0.5)	466 (37.0)	500 (39.7)
	준강제 추행	30 (2.4)	3 (0.2)	1 (0.1)	0 (0.0)	0 (0.0)	34 (2.7)	
성희롱		166 (13.2)	10 (0.8)	2 (0.2)	2 (0.2)	4 (0.3)	184 (14.6)	
통신매체이용음란		40 (3.2)	2 (0.2)	3 (0.2)	0 (0.0)	1 (0.1)	46 (3.7)	
카메라이용촬영		54 (4.3)	8 (0.6)	1 (0.1)	0 (0.0)	2 (0.2)	65 (5.2)	
스토킹		28 (2.2)	1 (0.1)	0 (0.0)	0 (0.0)	0 (0.0)	29 (2.3)	
음화등의 제조유포		2 (0.2)	0 (0.0)	0 (0.0)	0 (0.0)	0 (0.0)	2 (0.2)	
미상		57 (4.5)	12 (1.0)	8 (0.6)	3 (0.2)	7 (0.6)	87 (6.9)	
성폭력 계		964 (76.5)	146 (11.6)	83 (6.6)	41 (3.3)	26 (2.1)	1,260 (100.0)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 성인 가해자가 전체의 83.1%

<표6. 가해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인 가해자가 1,047명으로 전체의 83.1%를 차지하고 있다. 위의 표를 참고하면 성인 피해자인 경우가 964명(76.5%)이므로 전체 사건에서 가해자의 연령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피해유형		가 해 자 연 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및 강간 미수	특수강간	6 (0.5)	3 (0.2)	0 (0.0)	0 (0.0)	0 (0.0)	9 (0.7)	347 (27.5)
	강간 (유사강간포함)	165 (13.0)	18 (1.4)	3 (0.2)	0 (0.0)	19 (1.5)	205 (16.3)	
	준강간	92 (7.3)	6 (0.5)	0 (0.0)	0 (0.0)	5 (0.4)	103 (8.2)	
	강간미수	28 (2.2)	0 (0.0)	0 (0.0)	0 (0.0)	2 (0.2)	30 (2.4)	
강제 추행	강제추행	391 (31.0)	41 (3.3)	12 (1.0)	3 (0.2)	19 (1.5)	466 (37.0)	500 (39.7)
	준강제 추행	31 (2.5)	3 (0.2)	0 (0.0)	0 (0.0)	0 (0.0)	34 (2.7)	
성희롱		165 (13.1)	7 (0.6)	1 (0.1)	1 (0.1)	10 (0.8)	184 (14.6)	
통신매체이용음란		35 (2.8)	3 (0.2)	0 (0.0)	0 (0.0)	8 (0.6)	46 (3.7)	
카메라이용촬영		48 (3.8)	9 (0.7)	1 (0.1)	0 (0.0)	7 (0.6)	65 (5.2)	
스토킹		29 (2.3)	0 (0.0)	0 (0.0)	0 (0.0)	0 (0.0)	29 (2.3)	
음화등의 제조유포		0 (0.0)	0 (0.0)	0 (0.0)	0 (0.0)	2 (0.2)	2 (0.2)	
미상		57 (4.5)	9 (0.7)	0 (0.0)	1 (0.1)	20 (1.6)	87 (6.9)	
성폭력 계		1,047 (83.1)	99 (7.9)	17 (1.3)	5 (0.4)	92 (7.3)	1,260 (100.0)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7.1%

<표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098건(87.1%)으로 가장 많다.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의 경우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367건으로 성인 피해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청소년은 학교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35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족에 의한 피해가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어린이와 유아인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가 각각 47건, 17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7.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 건(%)

계	유형	아는 사람 1,098 (87.1)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인척 143(11.3)		직장	친밀한 관계	인터 넷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학교	유치원 /학원	주변 인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				기타
		친족	친/인 척													
2014년		107 (7.4)	94 (6.5)	300 (20.7)	130 (9.0)	55 (3.8)	118 (8.1)	60 (4.1)	120 (8.3)	31 (2.1)	109 (7.5)	19 (1.3)	31 (2.1)	132 (9.1)	144 (10.0)	1,450 (100)
2015년		166 (12.7)	21 (1.6)	336 (25.7)	135 (10.3)	42 (3.2)	72 (5.5)	55 (4.2)	150 (11.5)	23 (1.8)	80 (6.1)	11 (0.8)	19 (1.5)	119 (9.0)	79 (6.0)	1,308 (100)
2016년		118 (8.7)	19 (1.4)	368 (27.2)	141 (10.4)	43 (3.2)	63 (4.7)	78 (5.8)	160 (11.8)	35 (2.6)	102 (7.5)	11 (0.8)	40 (3.0)	101 (7.5)	74 (5.5)	1,353 (100.0)
2017년		113 (9.0)	30 (2.4)	375 (29.8)	116 (9.2)	40 (3.2)	60 (4.8)	66 (5.2)	121 (9.6)	40 (3.2)	73 (5.8)	19 (1.5)	45 (3.6)	103 (8.2)	59 (4.7)	1,260 (100.0)
성인 (20세 이상)		17 (1.8)	15 (1.6)	368 (38.2)	101 (10.5)	31 (3.2)	38 (3.9)	58 (6.0)	77 (8.0)	15 (1.6)	66 (6.9)	17 (1.8)	42 (4.4)	82 (8.5)	37 (3.8)	964 (100.0)
청소년 (19세-14세)		27 (18.5)	7 (4.8)	4 (2.7)	13 (8.9)	6 (4.1)	10 (6.8)	5 (3.4)	35 (24.0)	13 (8.9)	5 (3.4)	2 (1.4)	1 (0.7)	9 (6.2)	9 (6.2)	146 (100.0)
어린이 (13세-8세)		47 (56.6)	4 (4.8)	1 (1.2)	0 (0.0)	2 (2.4)	7 (8.4)	2 (2.4)	7 (8.4)	1 (1.2)	0 (0.0)	0 (0.0)	1 (1.2)	8 (9.6)	3 (3.6)	83 (100.0)
유아 (7세 이하)		17 (40.5)	4 (9.5)	0 (0.0)	0 (0.0)	0 (0.0)	5 (11.9)	0 (0.0)	0 (0.0)	11 (26.2)	1 (2.4)	0 (0.0)	1 (2.4)	0 (0.0)	2 (4.8)	41 (100.0)
미상		5 (19.2)	0 (0.0)	2 (7.7)	2 (7.7)	1 (3.8)	0 (0.0)	1 (3.8)	2 (7.7)	0 (0.0)	1 (3.8)	0 (0.0)	0 (0.0)	4 (15.4)	8 (30.8)	26 (100.0)

8. 상담원 지원내용

<표8. 상담원 지원내용>은 본 상담소가 2017년 상담을 의뢰해온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하였는지 보여주는 표이다. 중복표기 하였으며 심리·정서 지원이 764건(53.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법적 지원이 571건(40.2%)를 차지하였다.

법적지원은 월요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견서와 상담기록 제출 등의 사건지원과 전화상 법률 및 법률서비스기관 안내 및 연계로 이루어진다. 심리 및 정서지원은 전화상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내부 면접상담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료지원의 경우, 피해자에게 의료기관을 연계하거나 치료 및 상담에 동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쉼터연계는 쉼터 입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쉼터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부분이며 기타는 피해자를 거주지역의 상담소나 단체로 연계하거나 기타 치유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권한 경우이다.

<표8. 상담원 지원내용>

단위: 건(%) (중복표기)

전체지원수	법적지원	의료지원		심리·정서 지원	쉼터연계	기타
		의료기관 연계·동행	의료비지원			
1,421 (100.0)	571 (40.2)	10 (0.7)	32 (2.3)	764 (53.8)	2 (0.1)	42 (3.0)
		42 (3.0)				

9. 직장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상담 세부통계

9-1. 상사에 의한 피해가 50.1%, 동료, 고용주가 뒤이어

2017년도 전체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 상담이 375건으로 전체 1,260건 중 29.8%를 차지한다. 이는 피해자-가해자 관계 유형 중 단일 유형으로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으로 직장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아래의 <표9-1. 피해연령별 피-가해자 직장관계별 상담현황>를 보면 성인 피해가 직장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사에 의한 피해가 가장 높은 건수를 차지한다(188건, 50.1%). 그 다음으로 동료(70건, 18.7%), 고용주(55건, 14.7%)가 뒤를 잇는다.

<표9-1. 피해연령별 피-가해자 직장관계별 상담현황>

<단위:건(%)>

	직장 관계자							계
	고용주	상사	동료	부하	고객	거래처	기타	
성인 (20세 이상)	55 (14.7)	188 (50.1)	70 (18.7)	3 (0.8)	22 (5.9)	8 (2.1)	22 (5.9)	368 (98.1)
청소년 (19세-14세)	3 (0.8)	0 (0.0)	0 (0.0)	0 (0.0)	1 (0.3)	0 (0.0)	0 (0.0)	4 (1.1)
어린이 (13세-8세)	0 (0.0)	0 (0.0)	0 (0.0)	0 (0.0)	1 (0.3)	0 (0.0)	0 (0.0)	1 (0.3)
유아 (7세 이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미상	1 (0.3)	0 (0.0)	0 (0.0)	0 (0.0)	1 (0.3)	0 (0.0)	0 (0.0)	2 (0.5)
성폭력 계	59 (15.7)	188 (50.1)	70 (18.7)	3 (0.8)	25 (6.7)	8 (2.1)	22 (5.9)	375 (100.0)

9-2.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성희롱

<표9-2. 피해유형별 파-가해자 직장관계별 상담현황>를 보면 직장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상담에서 강제추행과 준 강제추행 피해를 상담한 경우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179건, 47.7%). 그 다음으로는 성희롱 피해 상담(105건, 28.0%) 이 뒤를 이었고 강간 및 강간미수의 경우도 15%를 넘게 차지하고 있었다.

<표9-2. 피해유형별 파-가해자 직장관계별 상담현황>

단위 : 건(%)

피해유형		직장 관계자							계	
		고용주	상사	동료	부하	고객	거래처	기타		
강간 및 강간 미수	특수강간	0 (0.0)	1 (0.3)	0 (0.0)	0 (0.0)	1 (0.3)	0 (0.0)	0 (0.0)	2 (0.5)	59 (15.7)
	강간 (유사강간포함)	10 (2.7)	13 (3.5)	3 (0.8)	0 (0.0)	0 (0.0)	0 (0.0)	0 (0.0)	26 (6.9)	
	준강간	2 (0.5)	13 (3.5)	5 (1.3)	0 (0.0)	0 (0.0)	0 (0.0)	3 (0.8)	23 (6.1)	
	강간미수	3 (0.8)	3 (0.8)	2 (0.5)	0 (0.0)	0 (0.0)	0 (0.0)	0 (0.0)	8 (2.1)	
강제 추행	강제추행	29 (7.7)	85 (22.7)	27 (7.2)	2 (0.5)	10 (2.7)	5 (1.3)	8 (2.1)	166 (44.3)	179 (47.7)
	준강제 추행	2 (0.5)	7 (1.9)	4 (1.1)	0 (0.0)	0 (0.0)	0 (0.0)	0 (0.0)	13 (3.5)	
성희롱		10 (2.7)	60 (16.0)	23 (6.1)	0 (0.0)	8 (2.1)	1 (0.3)	3 (0.8)	105 (28.0)	
통신매체이용음란		1 (0.3)	2 (0.5)	1 (0.3)	1 (0.3)	2 (0.5)	2 (0.5)	0 (0.0)	9 (2.4)	
카메라이용촬영		1 (0.3)	1 (0.3)	3 (0.8)	0 (0.0)	1 (0.3)	0 (0.0)	6 (1.6)	12 (3.2)	
스토킹		0 (0.0)	0 (0.0)	1 (0.3)	0 (0.0)	1 (0.3)	0 (0.0)	1 (0.3)	3 (0.8)	
음화등의 제조유통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미상		1 (0.3)	3 (0.8)	1 (0.3)	0 (0.0)	2 (0.5)	0 (0.0)	1 (0.3)	8 (2.1)	
성폭력 계		59 (15.7)	188 (50.1)	70 (18.7)	3 (0.8)	25 (6.7)	8 (2.1)	22 (5.9)	375 (100.0)	

10. 강간피해 상담 세부통계

10-1. 피해자의 96.1%는 여성, 성인 피해가 61.5% 차지

성폭력 피해 유형 중 강간(유사강간 포함)은 단일 피해 유형으로는 강제추행 다음으로 상담소에서 가장 많이 상담하는 유형이다. 이에 강간피해 세부통계를 내어본다. 작년 상담소에 강간피해를 상담한 피해자의 성별은 전체 205건 가운데 여성이 197건(96.1%), 남성이 8건(3.9%)을 차지하였다. 피해연령별로는 성인이 61.0%, 청소년이 22.9%, 어린이가 8.3%, 유아 5.9%로 성인피해 상담이 두드러졌다.

<표10-1. 강간피해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성별 \ 연령대	성인 (20세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이하)	미상	총계
여	119 (58.0)	47 (22.9)	16 (7.8)	11 (5.4)	4 (2.0)	197 (96.1)
남	6 (2.9)	0 (0.0)	1 (0.5)	1 (0.5)	0 (0.0)	8 (3.9)
총계	125 (61.0)	47 (22.9)	17 (8.3)	12 (5.9)	4 (2.0)	205 (100.0)

10-2. 가해자 성별은 94.6%가 남성, 가해자의 80.5%가 성인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94.6%를 차지하였고 가해연령별로는 성인이 165건, 80.5%를 차지하여 성인 피해자 건수(126건, 61.5%)보다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10-2. 강간피해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성별 \ 연령대	성인 (20세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이하)	미상	총계
여	9 (4.4)	0 (0.0)	0 (0.0)	0 (0.0)	1 (0.5)	10 (4.9)
남	156 (76.1)	18 (8.8)	3 (1.5)	0 (0.0)	17 (8.3)	194 (94.6)
미상					1 (0.5)	1 (0.5)
총계	165 (80.5)	18 (8.8)	3 (1.5)	0 (0.0)	19 (9.3)	205 (100.0)

10-3. 본인이 직접상담 53.2%, 대리인 상담 44.9%

강간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109건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대리인이 상담을 한 건수는 전체의 44.9%를 차지하였다. 대리인 상담에서는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이웃친구와 데이트 상대가 뒤를 이었다.

<표10-3. 강간피해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단위: 건(%)

전체상담 건수	본인	대리인 92 (44.9)									본인/ 대리인 (함께 상담)
		가족 친인척	데이트 상대	이웃 친구	직장	학교 학원	사회 복지 기관	기관 단체	변호사	기타	
205 (100.0)	109 (53.2)	56 (27.3)	7 (3.4)	15 (7.3)	3 (1.5)	1 (0.5)	2 (1.0)	6 (2.9)	0 (0.0)	2 (1.0)	4 (2.0)

10-4. 강간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7.3% 유아-청소년의 경우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가 많아

강간피해 상담에서 파·가해자 관계를 살펴봤을 때,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7.3%였다. 강간피해의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32건, 15.6%)가 2017년 전체 친족에 의한 피해 통계치(113건, 9.0%)보다 높았다. 이 중 유아-청소년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아 유아-청소년 연령대의 강간피해의 경우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특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의 경우 직장 관계, 친밀한 관계(前現 연인, 배우자), 또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관계인 가해자에 의한 강간피해 상담이 많았다.

<표10-4. 강간피해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계	유형	아는 사람 179(87.3)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인척 38(18.5)		직장	친밀한 관계	인터넷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학교	유치원/학원	주변인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				기타
		친족	친/인척													
성인 (20세 이상)	2 (1.0)	1 (0.5)	25 (12.2)	24 (11.7)	14 (5.8)	5 (2.4)	5 (2.4)	10 (4.9)	2 (1.0)	13 (6.3)	3 (1.5)	9 (4.4)	6 (2.9)	6 (2.9)	125 (61.0)	
청소년 (19세-14세)	11 (5.4)	4 (2.0)	1 (0.5)	6 (2.9)	5 (2.4)	3 (1.5)	1 (0.5)	4 (2.0)	2 (1.0)	2 (1.0)	1 (0.5)	0 (0.0)	2 (1.0)	5 (2.4)	47 (22.9)	
어린이 (13세-8세)	11 (5.4)	0 (0.0)	0 (0.0)	0 (0.0)	0 (0.0)	1 (0.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2.0)	1 (0.5)	17 (8.3)	
유아 (7세 이하)	7 (3.4)	1 (0.5)	0 (0.0)	0 (0.0)	0 (0.0)	2 (1.0)	0 (0.0)	0 (0.0)	1 (0.5)	0 (0.0)	0 (0.0)	1 (0.5)	0 (0.0)	0 (0.0)	12 (5.9)	
미상	1 (0.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0 (0.0)	0 (0.0)	0 (0.0)	2 (1.0)	4 (2.0)	
총계	32 (15.6)	6 (2.9)	26 (12.7)	30 (14.6)	18 (8.8)	11 (5.4)	6 (2.9)	14 (6.8)	5 (2.4)	16 (7.8)	4 (2.0)	11 (5.4)	12 (5.9)	14 (6.8)	205 (100.0)	
2017년 전체	113 (9.0)	30 (2.4)	375 (29.8)	116 (9.2)	40 (3.2)	60 (4.8)	66 (5.2)	121 (9.6)	40 (3.2)	73 (5.8)	19 (1.5)	45 (3.6)	103 (8.2)	59 (4.7)	1,260 (100.0)	

10-5. 상담 전 조치 및 대응

강간피해 상담에서 피해자들의 상담 전 조치 및 대응을 살펴보면 사전 대응을 한 경우가 53.7%로 집계되었다. 이 중 법적대응을 한 사례가 2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사전에 고소나 신고 등 법적 대응을 하였더라도 가해자 처벌이 미비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10-5. 강간피해 상담 전 조치 및 대응>

단위: 건(%) (중복표기)

강간피해 상담건수	상담 전 조치 및 대응 110 (53.7%)					
	법적대응	의료기관	기관 내 대응	주변인도움요청	기타	사과요구
205 (100.0)	47 (22.9)	13 (6.3)	6 (2.9)	28 (13.7)	4 (2.0)	12 (5.9)

10-6. 상담원 지원내용

강간피해 상담에서 상담원이 가장 많은 지원을 한 부분은 심리-정서지원(125건, 53.0%)이고 법적지원(84건, 35.6%)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는 2017년 전체 상담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율로 피해 유형에 상관없이 전체 성폭력 상담에 있어 피해자 심리-정서지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0-6. 강간피해 상담원 지원내용>

단위: 건(%) (중복표기)

전체지원수	법적지원	의료지원		심리-정서지원	쉼터 연계	기타
		의료기관 연계·동행	의료비지원			
236 (100.0)	84 (35.6)	3 (1.3)	10 (4.2)	125 (53.0)	2 (0.8)	12 (5.1)
		13 (5.5)				

10-7. 강간죄 '최협의설'에 근거한 성인강간피해 분석

형법 제297조, 제298조에 따르면 강간과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르면 강간죄 그리고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는 '최협의(最狹義)설'이 존재한다.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수준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최협의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 정도에 집중하여 강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실질적인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만들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반성 폭력 운동 단체들은 강간죄의 최협의설을 비판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2017년 강간피해 상담 205건 중 피해연령 20-64세 사이의 성인 피해 124건을 최협의설 기준과 피해자의 호소내용을 비교하며 분석하였다. 피해연령이 노인(65세 이상)이거나 아동·청소년일 경우 법에서 별도의 죄로 규율되거나 피해자의 취약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10-7. 강간죄 최협의설 구성요건에 따른 성인강간피해 상담 분석>

단위: 건(%)

강간죄 최협의설 구성요건	가해자의 심각한 수준의 폭행·협박 존재	9	15 (12.1)
	피해자의 강한 저항 또는 도망친 행위 존재	5	
	가해자의 심각한 수준의 폭행·협박과 피해자의 강한 저항 또는 도망친 행위가 함께 존재	1	
가해자의 심각한 수준의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 또는 도망친 행위 부재			54 (43.5)
확인 또는 판단 불가능			55 (44.3)
계			124 (100.0)

위 <표10-7. 강간죄 최협의설 구성요건에 따른 성인강간피해 상담 분석>에 따르면 20-64세 사이 성인강간피해 상담 124건 중 확인 또는 판단이 어려운 55건을 제외한 사례에서 강간죄 최협의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가해자의 심각한 수준의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 또는 도망친 행위가 존재하는 사례는 15건(12%)이었는데, 최협의설에 따르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의 수준이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에서 심각한 수준의 물리적인 폭력 또는 직접적인 협박이 있는 사례나, 피해자의 저항 정도에서 피해자가 도망을 친다거나 온몸으로 물리적인 저항을 하는 수준일 경우를 분류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부재한 사례는 54건으로 124건 중 43.5%를 차지했다.

10-8. 피해자들의 강간 경험과 강간죄 최협의 판단기준의 괴리

앞서 보았듯이 성인강간피해 상담 124건 중 가해자의 심각한 수준의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이 존재하지 않는 사례는 54건이었다. 그렇다면 이 54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자의 행위는 어떠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10-8. 피해자가 강간임을 호소한 이유>

단위: 건(%) (중복표기)

가해자 행위 14 (19.4)	가해자가 억지로 또는 힘으로 함	16
	가해자가 폭언 함	1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회유와 강요함	3
	가해자가 급작스럽게 함	5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임	4
피해자 의사표시 19 (26.4)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함	3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함	16
피해자 행위 24 (33.3)	지속된 폭력피해 경험으로 저항 못함	5
	가해자의 지위나 주변인과의 관계로 저항 못함	14
	무서웠거나 얼음이 되어 저항 못함	2
	원치 않았으나 마음이 약해짐	2
	성관계를 회피하려고 핑계를 대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1
계		72

피해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행위가 강간임을 호소한 이유로는 피해자가 거절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19건, 26.4%), 가해자의 행위가 폭력적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14건, 19.4%),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점(24건, 33.3%)을 들고 있다. 강간죄를 최협의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수사·재판부의 판단과는 괴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 강간죄 인정에 있어 최협의설을 벗어나 당시 상황과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맥락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이유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판결도 많아지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촉구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작년 '중요한 성폭력 판결 시리즈' 에서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에서 선고된 마빈 주커 판사의 2016ONCJ448 판결문을 번역 발간한 바 있다. 이 판결문은 성폭력을 '성적 완전성의 침해'로 보고 성폭력의 구성요소를 '합의의 부재'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세우고, 면밀한 심문을 거쳐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낯설 수 있으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의미 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단순히 사법부의 판결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 사회의 인식과 문화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 합의 또는 동意的 부재를 강간의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되면 현재 폭행·협박의 유무나 피해자의 저항에 집중된 수사의 틀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로 바뀌어 실질적인 가해자에 대한 수사로 집중될 수 있으며, 원치 않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행위를 금지하는 사회규범으로 안착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 경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현실적 경험치를 반영하는 강간죄 판단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